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454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6년 10월 31일
- 라. 회부일자 : 2016년 11월 3일

2. 제안이유

-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 추진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오류 및 일본어투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수정하여 시민들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종합평가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한 평가방식에 따르도록 수정(안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 나.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관련 조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관련 조항으로 수정(안 제6조, 제13조, 제15조)
-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됨에 따라 기관장 계약해지 관련 조항은 삭제(안 제6조)
- 라. 띄어쓰기, 일본어투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수정(안 제6조, 제19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를 기존의 평가용역 방식에서 서울시의 성과관리체계로 변경하기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책임운영기관 운영 현황

- 책임운영기관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의 사무 가운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해 행·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
- 시는 2008년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을 확정된 이후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교통방송 등 3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

〈책임운영기관 운영현황〉

구 분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교통방송
기관장	3급(개방형)	3급(개방형)	3급(개방형)
기 구	2부 7과 1소 1관	2부 1관 6과	2실 4국 18부
인 력 (정/현원)	83/90명	83/78명	166/158명
예 산 (2016년)	15,802백만원	12,403백만원	88,599백만원
기 능	-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보존전시 - 전통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국내외 박물관 교류	- 미술관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 국내외 미술관 교류, 미술관련 행사 개최	-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 라디오, tv, DMB 등을 통한 의정·시정 및 생활정보 제공

- 시는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와 책임운영기관 존속여부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인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참고자료).
-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최근 3년간 매년 2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해 연도별 사

업계획승인과 평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음.

-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행정서비스 효과성 제고라는 책임운영기관 본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공공성에 따른 자율성 제한이나 출연기관 추가설립과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확대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당초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해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에 대한 파격적인 확대 등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음.

다.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의 개선(안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 안 제6조와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 평가 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시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와 관련해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평가하도록 하고, 관계전문가나 기관에 평가에 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이 평가결과를 기관장의 채용계약의 연장과 해지,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책임운영기관 평가주체 및 관련 예산내역〉

연 도	평가주체	평가용역 금액	용역기간
2016 (‘15년 실적평가)	한국경제경영연구원	42,100천원	‘16.5.17~’16.8.28
2015 (‘14년 실적평가)	한국경제경영연구원	42,400천원	‘15.2.3~’15.5.15
2014 (‘13년 실적평가)	한국경제경영연구원	49,500천원	‘14.2.12~’14.6.11

- 최근 3년간 시는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실적평가를 의뢰하는 형태로 평가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기관 성과포상금과 연계하고 있음.
- 하지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수 차례 3개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이나 주요사업 내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기존의 외부 용역기관이 대행하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가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정량평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 내부의 성과관리체계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시가 실시하는 기존의 3급이상 사업소 평가그룹에 책임운영기관을 추가로 편입해 업무난이도와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담보하고 부수적으로 연간 약 7천만원의 평가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 시 성과관리 체계가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과중심 체계로 이미 확립된 상태에서 구태여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부 용역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의존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평가제도의 변경 자체는 환영할 만한 조치임.
- 다만,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의 평가체계를 책임운영기관에 적용함에 따라 민간과의 서비스 경쟁을 통한 효과성 제고라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자체의 무용론으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고가 요구됨.

라. 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등(안 제 6조 등)

- 안 제6조 등은 2013년 기존의 '지방계약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던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이 폐지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지방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일본어투 표현 등을 어법에 맞고자 정비하고자 함.
-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이나 조문변경은 사소하지만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혼란을 막아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참고자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구성

연번	성명	성별 (남,여)	위촉구분	구분	현소속 및 직위
1	장혁재	남	당연직	위원장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2	윤준병	남	당연직	위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3	고홍석	남	당연직	위원	서울시 문화본부장
4	김태균	남	당연직	위원	서울시 정책기획관
5	김근세	남	위촉직	위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6	송석휘	남	위촉직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7	박천오	남	위촉직	위원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8	서지희	여	위촉직	위원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9	박미정	여	위촉직	위원	환기미술관 관장
10	윤태진	남	위촉직	위원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11	최성은	여	위촉직	위원	덕성여대 미술사학과 교수